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57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 김주영·박홍배·박해철

박희승 • 정태호 • 박균택

한정애 · 오세희 · 윤건영

강준현 · 김남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 및 물 부족 발생이 심화되고 있어 물 재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는 공업용수 등으로 안정적인 재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온배수특성상 처리 효율이 높아 전력비가 절약되고 배출수의 방류량이 감소하여 해양생태계 영향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온배수를 효 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 는 자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온배수의 재이용이 촉진되 도록 하기 위함(안 제2조 및 제23조).

법률 제 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발전소 온배수"를 "온배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중 "발전소 온배수"를 "온배수"로, "발전과정"을 "발전과정 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내 생산공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2 및 제9호 중 "발전소 온배수"를 각각 "온배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물 재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	1		
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			
리수 및 <u>발전소 온배수</u> 를 물	<u>온배수</u>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			
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			
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			
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6의2. " <u>발전소 온배수</u> "란 취수	6의2 <u>온배수</u>		
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			
소는 제외한다)의 <u>발전과정</u> 에	<u>발전과정 또는 공장</u>		
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	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내 생		
를 말한다.	<u> 산공정</u>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7의2.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7의2		
<u>발전소 온배수</u> 를 재이용할 수	<u> 온배수</u>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생	략)
Ο.	(´ö'	- i

9. "온배수 재이용사업"이란 온 배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 (이하 "온배수 재처리수"라 한 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 다.

10. (생략)

-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빗물이용시설,</u>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한 ·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8. (현행과 같음)
9
온배수
· 10 /처체코 가야)
10. (현행과 같음)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u>물 재이용시설</u>
<u>.</u>
②
첫
<u> </u>
• 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
<u>배수 재처리수</u>